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간주예산 3 차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| 일시차입한도액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| 362,551,649 | 10,876,549 |
| 일반회계 | 343,810,575 | 10,314,317 |
| 특별회계 | 18,741,074 | 562,232 |
| 기타특별회계 | 18,741,074 | 562,232 |
| 재정비축진특별회계 | 568,060 | 17,042 |
|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| 1,986,734 | 59,602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| 797,325 | 23,920 |
| 지하수관리특별회계 | 1,414,545 | 42,436 |
| 주차장특별회계 | 11,766,687 | 353,001 |
|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| 2,200,000 | 66,000 |
| 기반시설특별회계 | 7,723 | 232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 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,188,706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,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제 9 조 금후 추경 후 연말까지 내시되는 의존재원(국·시보조금,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등)과 상급기관 공문에 의한 지방비 부담이 있는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은 예산승인(명시이월 포함)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